



### ① 최저임금 인상



#### 한줄요약

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7,530원 적용

#### 지원내용

- 전년 대비 16.4%(1,050원) 인상
- 월 급여 환산 시 1,573,770원(7,530원x209시간)
-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의무적용

## 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

신청 ▶ <http://jobfunds.or.kr/>

### 한줄요약

사업주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자 1인당 13만원씩 지급

### 지원대상

-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대상
  -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
  -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(신청일 기준)

## ③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



### 한줄요약

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 씩 최대 3개월 간 수당 지급

### 지원내용

-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
- 취성패를 진행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 대상(3단계 진입 시 신청)
-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의무

### ④ 청년 공공임대주택



**한줄요약**

'18년 청년 전용 주택 7만실 공급 공공임대 2만실+공공지원 2만 4천실 + 기숙사 2만 6천실

**지원내용**

- 공급 대상 : 만 19~35세 이하 청년
- 임대료 : 시세의 70~85% 수준
- ~2020년까지 청년 공공임대주택 25만실, 대학생 공공기숙사 5만호 공급

### 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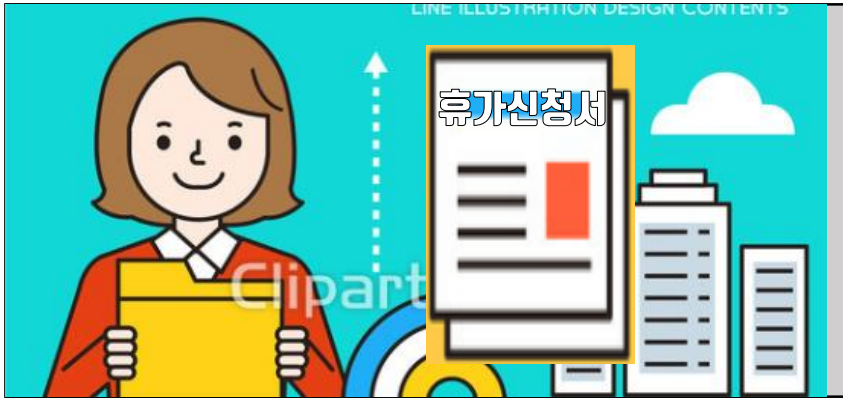
**한줄요약**

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최고금리 3.3% 청약통장 신설(6월 시행)

**지원내용**

- 대상 : 19~29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
- 금리 : 연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2.5~3.3%  
(총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초과세, 연간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)  
*\*기존 청약통장 해지 후 신규가입 시에도 가입기간 인정*

## ⑥ 신입 유급휴가 지급



### 지원내용

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연차유급휴가 지급

### 지원내용

- (기존)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2년차 연차일수에서 차감
- (개정) : 입사~1년차까지 최대 11일 /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 보장
- 시행일 : 2018년 5월 29일

## ⑦ 군월급 인상



### 지원내용

병장 월급 87% 인상(21만 6천원→40만 5700원)

### 지원내용

- 상병 : 19만 5천원 → 36만 6200원
- 일병 : 17만 6400원 → 33만 1300원
- 이병 : 16만 3천원 → 30만 6100원

청년들이 행복한 세상  
올해도 청년정책이 함께 만들겠습니다



청년을 위한 세상 모든 정책

청년정책사용설명서 ▼